제 268 호

1972. 8.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 식
편 집 : 공보실장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236호 서울특별시건축행정위금규칙 ……………………………… 3

◎ 고 시

제 107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 11
제 110호 서울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 15

◎ 사 령 ……………………………………………………………… 16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 울 특 별 시

규 칙

서울특별시건축행정취급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택 식

1972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규칙제1236호

서울특별시건축행정취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위법설계 및 위반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사감리라 함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는 여부를 건축사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계)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법 또는 부실설계에대한조치) 위법 또는 부실설계를 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취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당해 건축사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동일건축허가신청서를 2회 제출하거나 또는 취하하였을때 - 경고
2. 동일건축허가신청서를 3회 제출하거나 또는 취하하였을때 - 1월영업정지
3. 동일건축허가신청서를 4회 제출하거나 또는 취하하였을때 - 3월이상 영업정지

제5조(건축허가불허) 시장은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건축사에 대하여는 3월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의 단서규정사항에 의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건축허가처리카드) ①건축허가를 할때에는 반드시 연도별 번호순으로 건축허가처리카드(별표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이 이를 보관한다.
②건축허가처리카드 이면 기재사항은

1077

착공 및 중간검사 복명서작성과 동시에 기재하여 담당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감리자및 시공자 선정보고) 건축허가 예고통지를 받은 건축주는 허가증 교부시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며 허가청에 신고(별표 제2호서식)함과 동시에 면허세 및 자립저축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착공및 준공신고)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 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착공및 준공검사) ①착공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담당직원은 2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착공검사후 복명서작성과 동시에 건축허가처리카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담당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착공검사후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의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한계) 건축 연면적이 150 ㎡이상의 건축물에는 공사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1조(감리자의무) ①공사감리자는 감리를 수임하였을 때에는 위법 또는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리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준공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감리자현장근무) ①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 책임하에 보조원으로 하여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감리자가 보조원을 두었을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리일지비치)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공사감리일지(별표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정보고) 공정보고(별지 제4호서식)는 공사감리자가 매월 1일과 15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실감리자조치) 시장은 위반 건축물을 발생하게 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리건축물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실공사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공사감리자가 위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

1차 - 경고

2차 - 당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될때까지 영업정지

2. 감리건축물이 위법 건축물로서 고발되었을때 - 3월이상 6월이하 영업정지

3. 2회이상 위반 건축물 감리자로 처벌될때 - 6월이상 1년이하 영업정지

4. 감리건축물이 위반 건축물로서 허가취소 되었을때 - 6월이상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5. 감리건축물에 대하여 공정보고를 이행치 아니 하였을때

가. 1회 - 경 고

나. 2회 - 10일 영업정지

다. 3회 - 15일 영업정지

라. 3회이상 - 1월 영업정지

6. 허위로 공정보고를 하였을때 - 2월이상 영업정지

7. 위반건축물의 준공신고서에 서명날인하였을때 - 6월이상 영업정지

제16조(공사감리의 포기제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한 사유이외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포기할 수 없다.

1. 감리자가 사망하였을때

2.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건축주와 협의가 되었을때

3. 장기간 해외여행 또는 질병등으로 감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

제17조(중간검사) ①중간검사는 공사현황 파악과 위반건축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중간검사는 공사감리자의 공정보고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담당자는 중간검사후 복명서작성과 동시에 건축허가처리카드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담당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중간검사후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의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건축물신고) 공사감리자가 감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실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건축주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감리자는 허가청에 즉시 위법건축공사신고(별표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확인및 시정) 담당자는 위반건축물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2일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제1호서식

건 축 허 가 처 리 카 - 드 (전면)

(1) 허가번호	제 호		
(2) 건축허가년월일	서기 197 년 월 일	(3) 허가담당자직성명	
(4) 건축주주소·성명	시 군 로 / 도 군 동 가 번지 호		
(5) 건물위치	서울특별시 구 로 동 가 번지 호		
(6) 설계자의 자격·주소·성명			
(7) 공사감리자의자격주소성명			
(8) 공사시공자의자격주소성명			
(9) 용도지역 및 방화지구	주거지역·주거구역·상업·준공업·공업·녹지·미지정·방화·미관지구·기타		
(10) 주요용도및공사종별	조·신축·증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중요변경·기타		

(11) 대지면적	㎡	(12) 건축면적	㎡	(13) 연면적	㎡	(14) 공지비율	%	(15) 주차장	옥내 ㎡ / 옥외 ㎡	(16) 수세식 인 / 수세식 인

(17) 층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계
바닥면적												

별표제2호서식

건 축 공 사 감 리 자 및 시 공 자 선 정 신 고 서

건축주 주소 : 건축주성명 :

허가위치 : 구 동 번지

건축허가번호및년월일 :

시공자 주소 성명 :

감리자의 자격 주소 성명 :

건 축 내 용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층 수

용 도

위와 같이 건축공사 감리자및 시공자를 선정하고 신고합니다.

1972. . .

건 축 주 인

별표제 3 호서식

공 사 감 리 일 지

197 년 월 일 (날씨 :)

공사내용 :

공 정 :

특기사항 :

의 견 :

감 리 자 인

※ 확 인 자 : 197 년 월 일

성 명 인

별표제 4 호서식

건 축 공 사 공 정 보 고 서

1. 허가번호 :　　2. 허가년월일 :　　년　　월　　일

3. 건축물위치 :　　구　　동　　번지

4. 건축주주소성명 :

5. 감리자자격주소성명

6. 시공자주소성명 :

7. 공사현황 :

구　　분	허 가 사 항	시 공 사 항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층　　수		
전 체 공 정	100 %	%

8. 기 타 사 항

9. 감리자의견 (예 : 적법여부사항등기재할것)

19　　.　　.　　.

급 건축사　　인

귀 하

(별표 제5호서식)

위 법 건 축 공 사 신 고 서

건 축 주 주 소 : 건축주성명 :

허 가 위 치 :

건축허가번호및년월일 :

시공자의주소 , 성명 :

감리자의자격 , 주소 , 성명 :

구조 : 용도 : 층수 : 연면적 :

위현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축법 제6조2항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을 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

3.

신 고 자(감리자) ㊞

197 . . .

귀 하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영등포구 신림동	150-15	대	350	150-91	대	24	신림동 427-118	홍치용	근 2,000,000 충남당진군합정면 운산리 317권숙자
2	〃	150-16	〃	392	150-72	〃	1	이태원동 272	정승문	
3	〃	147	답	114	147-5	답	67	신림동 171	김삼성	가등기 신림동 171 김영현
4	〃	147-1	전	294	147-6	전	245	〃	〃	〃
5	〃	149	대	1 642	149-2	대	1,156	상도동 26-12	최관점	
6	〃	150-33	〃	436	150-73	〃	17	안암동5가 1.12-117	남의진	가등기 지상권 150-33 박재성
7	〃	150-35	〃	73	150-75	〃	5	신림동 410-22	김두철	근 3,500,000 지 한국외환은행
8	〃	149-1	전	102	149-4	전	0.6	시흥동 92	김율암	
9	〃	150-39	대	522	150-78	대	399	노량진동 235-1	김종식	
10	〃	150-40	〃	333	150-79	〃	108	합정동 378-17	조동근	근 2,900,000 지 10 금성융산센타
11	〃	150-70	〃	329	150-76	〃	78	신림동 427-150	이화섭	
12	〃	150-45	〃	206	150-82	〃	57	예장동 2-8	조성애	(가)갈현동 504-30주영주 강서우㉮서울농협협조
13	〃	150-68	〃	160	150-90	〃	112			미등기
14	〃	150-46	〃	281	150-85	〃	72	효자동 69-5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07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신설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제1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72. 7.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울대학교 진입도로 공사(신설)
폭:35미터 연장:520미터
3.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장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2. 7- 1972. 1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건물의 조서:별첨
6.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인 가 증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도로신설
폭:35미터 연장:520미터
3. 사업의 시행자:서울특별시장
4. 인가번호:서울특별시 고시 제107호
5. 사업기간:1972. 7 - 1972.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정함.

1972. 7. 25

서 울 특 별 시 장

인 가 조건

1.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계략 설계도서(평면도)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5	신림동	150-51	대	140	150-86	대	122	청운동 45-3	윤상월	
16	〃	150-53	〃	328	150-87	〃	232	연희동 400-54 이태원동 124-7	이재순 허금연	
17	〃	150-54	〃	386	150-89	〃	46	창신동 646-5	박명덕	
18	〃	155-4	〃	324	155-10	〃	117			미등기
19	〃	155-1	전	467	155-5	전	245	영등포동 7가 62	김기윤	
20	〃	155-2	답	392	155-7	답	230	용산구신창동 56-20	윤해용	
21	〃	155-3	답	89	155-3	답	88.4	연희동 400-54 이태원동 124-7	이재순 허금연	
22	〃	153-1	전	96	153-2	전	35	〃	〃	
23	〃	153-9	대	53	154-13	대	10	전농동 500-6	최세식	
24	〃	154-3	〃	100	154-12	〃	58	방화동 568	이용원	
25	〃	150-47	〃	69	150-83	〃	22	연희동 44-3	성창현외6인	
26	〃	150-48	〃	516	150-84	〃	40	갈현동 35-2	박진광	
27	〃	150-43	〃	381	150-81	〃	156	이촌동 300-26	안경원	
28	〃	150-42	〃	298	150-80	〃	166	연희동 400-54 이태원동 124-7	이재순 이금연	
29	〃	150-37	〃	420	150-77	〃	96	노량진동 235-1	김종식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목	지번	지적	주소	성명	
30	신림동	150-52	대	140	156-52	대	140	장위동 237-190	박해인	
31	〃	150-38	〃	57	150-38	〃	57	노량진동 235-1	김종식	
32	〃		〃		150-47	〃	47	합정동 378-17	조동근외 3인	
33	〃				150-44	〃	38	이촌동 300-26	안경원	
34	〃	산10-2	임	보 351·00	산10-7	임	보 008·00	연지동 270	박용성	근지 조홍 근저 게일
35	〃	150-34	대	565	150-74	대	395	신림동 410-22	김두철	근지 외환은행
36	〃				154-4	〃	244	신림동 171	전학수	
	계			3.6 건				5,166		

건　물　조　서

순위	소 재 지	구　조	총건평	수용평수	소유자주소	성　명	비　고
1	신림동154-4	연와조 평옥개	24·68	24·68	신림동 171	전 학 수	
2	〃	철근콩크리트 평옥개	14·42	14·42	〃	〃	
3	신림동154-3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19·36	19·36	방화동568	이 용 원	
	계		58·46	58·46			

◎서울특별시고시제 110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1. 서울도시계획사업(도로신설)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제1과와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가. 공람기간 : 1972·8·1 — 15(14일간)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북구 수유동 276 - 2 279 - 3 도시계획사업
폭 25　　길이 54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우이동지내 도로시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4.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1972. 8 - 72. 1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 주소, 성명 생략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건설 관리제1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1972. 7. 31.
서 울 특 별 시 장

사 령

◎ 1972·7·27·

보건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범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
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 정 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영등포구 지방토목기원 민 병 용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중 구 지방행정서기보 임 치 홍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충남보령군 지방행정서기보 오 종 윤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용산구근무를 명함.

부산시동부
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하 갑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경북금능군 지방행정서기보 이 오 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경남남해군 지방행정주사 신 우 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중구근무를 명함.

경기도수원시 지방행정서기보 조 종 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 1972·7·28·

윤 낙 환
서기관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 1972·7·31·

기 전 과 지방기계기원 지 종 건
지하철건설본부근무를 명함.

성 북 구 기계기사보 오 정 환
지하철건설본부파견근무를명함.

시흥보조수원지 지방전기기사보 이 송 만
지하철건설본부파견근무를명함.

원 호 처 건축기사 윤 태 웅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종로구근무를 명함.

성북금능군 지적기원 정 태 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지적기원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성북구근무를 명함.

한강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김 용 진
개량과 파견근무를 명함.

구획정리2과 지방토목기사보 이 상 진
주택건설과 파견근무를 명함.

영등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이 상 원
주택건설과 파견근무를 명함.

토 목 과 지방토목기원 조 종 식
개량과 파견근무를 명함.

구획정리1과 지방토목기원 우 제 오
개량과 파견근무를 명함.

서대문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나 석 근
주택건설과 파견근무를 명함.

마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유 응 선
주택건설과 파견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